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155
----------	-----

제안연월일 : 2019. 8.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평창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부여,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 계약자 : (주)청강
- 용역기간 : 2018. 3. 2 ~ 2019. 3. 1
※2019. 1. 21 : 용역 일시중지(행정절차 및 상급기관 업무협의 지연)
- 세부내용 : 「붙임」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참조

3. 추진상황

- 2018. 3. 2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1 ~ 8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강원도와의 협의(4회)
- 2019. 8. 13 : 주민공청회 개최

4. 향후계획

- 2019. 8 : 관련 부서 검토 및 협의
- 2019. 9 : 군계획위원회 자문
- 2019. 9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평창군 ⇒ 강원도)
- 2019. 11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강원도)
- 2019. 11 :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및 서류 열람(30일 이상)

5. 기대효과

- 평창군의 도시지역의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활성화지역의 지정(안),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여,
-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6.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 1부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1부. 끝.

관계법령 발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략

③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